

국 민 평 생 직 업 능 력 개 발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2. 9.

고 용 노 동 부
(직업능력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용자 또는 수강 제한 기간을 늘리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용자·수강의 제한 기간,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의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강의 제한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강의 제한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훈련기관이 위탁계약 해지 또는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간 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하도록 하고,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함.

나. 부정수급의 추가징수액 한도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부정수급의 주체 및 부정수급 금액과 관계없이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을 신청한 횟수,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5배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비함.

다. 조사 불응 등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
하는 기관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
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계약해지와 3
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 또는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
인정제한을 하도록 조치기준을 마련함.

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기간 연장(안 별표 6
의2)

근로자·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이 법에 따른 비용을 지원·융자받은 경우 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 . ~ .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강의 제한 기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강의 제한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2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
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비율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	3회 미만	100분의 100
	3회 이상	100분의 200
	5회 미만	
	5회 이상	100분의 300

- ②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횟수에 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
호에 해당하여 지원·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
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

정수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3회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0
2.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 100분의 400
3. 5회 이상의 경우 : 100분의 500

별표 1에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법 제16조 제2항제7호	계약해지와 3개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	------------------	---------------------------

별표 1의2에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2항제9호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	------------------	---------------------------

별표 2에 제2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법 제24조 제2항제9호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	------------------	---------------------------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2의 제1호가목3) 중 “3년의”를 “5년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조의2, 별표 1 제2호사목, 별표 1의2 제2호자목, 별표 2 제2호차목, 별표 4의2 및 별표 6의2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 해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사목, 별표 1의2 제2호자목 및 별표 2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용자·수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강의 제한 기준(제17조의2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조문	처분기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제한 또는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의2 제1항	강의 제한 1년 강의 제한 2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대상자 선발) 영 제1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4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대상자 선발) <삭 제>									
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징수 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제1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강의 제한 기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강의 제한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table><tr><th colspan="2">구분</th><th>비율</th></tr><tr><td>최근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td><td>3회 미만</td><td>100분의 100</td></tr><tr><td></td><td>3회 이상 5회 미만</td><td>100분의 200</td></tr></table>	구분		비율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회 미만	100분의 100		3회 이상 5회 미만	100분의 200
구분		비율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회 미만	100분의 100								
	3회 이상 5회 미만	100분의 200								

또는 용자를 받은 금액의
3배

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
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1
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금액의
4배

다.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
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
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금
액의 5배

2. 법 제56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3. 삭제

<신 설>

<u>훈련비용을 신</u>	<u>5회</u>	<u>100분의</u>
<u>청한 횟수</u>	<u>이상</u>	<u>300</u>

②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횟수

② · ③ (생략)	에 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원·용자 또는 수강을 제한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3회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0 2.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 100분의 400 3. 5회 이상의 경우 : 100분의 500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270